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39

발의연월일: 2020. 9. 25.

발 의 자:최혜영·허종식·송재호

고영인 · 김상희 · 신동근

오영환 • 이용빈 • 김남국

인재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의 중심 전달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위탁방식은 해당 법 제41조(위임·위탁)에 따라 2년~3년 주기 공모를 통해 공공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 공모 때마다 수탁자가 변경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어 안정적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의 위임·위탁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고,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의 위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기하며, 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쉮터의 운영과 동법 제22조에 따

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41조).

법률 제 호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2항 전단 중 "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"를 "시·도지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을 지정하여"를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"로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 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1조(위임·위탁) ① (생 략) 제41조(위임 ·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 ② -----시·도지 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보건 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법률 |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 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 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 원센터는 「장애아동 복지지원 법」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 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 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 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 <신 설>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할

③ (생략)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36조에 따른 발달 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•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수	Ŏ]	다	
,	_/^	, ,	•

-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- ⑤ -----「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 <u>으로 정하는 기관에-----</u>